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44)

2022. 9.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44

I.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 출 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별지 서식〕‘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지 서식(입원환자 서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성별)’ 작성란으로 변경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5. 19. ~ 2022. 6. 0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별지 서식인 ‘입원환자 서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별지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입원환자 서약서 (생략) 환자본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입원환자 서약서 (현행과 같음) ----- ---: (-----:) ---: (--) <u>생년월일(성별):</u>

나. 검토의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법령의 범위 또는 일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 4. <중략>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 8. <생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중략>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13. <중략>

③ ~ ④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조례 제5조제3항4)에는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행위로 보여지며, 아울러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⁵⁾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이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동안 입원환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원환자 서약서’의 수집·처리 등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 4)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사물 반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원실에서 환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환자복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